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명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2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9.

발 의 자 : 강명구 · 임종득 · 임이자
김장겸 · 성일종 · 나경원
이성권 · 김정재 · 엄태영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공익적 필요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농지 취득·소유를 허용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로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약화와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인구감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·면 지역에서의 농지 활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아니한 실정임.

이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·면 중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·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,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(안 제6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).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
12. 「지방자치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·면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출생률, 65세 고령인구,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를 소유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.

③ · ④ (생략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